

학술정보

비즈니스 모델 특허(II)

- 비즈니스 모델 발명의 특허요건과 분쟁 -

이 철희

(I&S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1. 비즈니스 모델 특허출원 현황

요즈음 벤처기업은 벤처 투자와 코스닥 시장의 전성기이던 약 2년 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고들 한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출원 건수는 그만큼 위축된 것 같지는 않다. 다시 말해, 비즈니스 모델 특허출원이 재작년이나 작년에 비하여 4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것 같지는 않다. 수년전부터 일기 시작한 벤처기업 열풍과 소위 벤처현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히려 수많은 벤처기업이 생성되고 명멸하는 벤처라는 말 그대로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은 언더댐핑(Under-Damping)을 통해 정상 상태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복이라고 보고 싶다.

특허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출원에 관한 특허청의 자료를 보면,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출원은 1992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1년에는 10,000 건 가까이 출원될 정도로 비즈니스 모델 특허출원 봄이 식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의 경험에 의거, 내용 측면에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출원을 살펴보면, 3, 4년 전까지만 해도 광고 모델이 가장 많았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다양하고 기발한 광고 방법들이 많이 출원되었다. 다이얼패드로 신화적으로 성공한 새롬기술의 VoIP 응용기술이 등장한 이후에는 인터넷 폰 등의 출원이 한 때 성행했었다. 그 이후는, 전자상거래 모델이 다수 출원되었는데, 초기에는 B2C, 그리고 나중에는 B2B 관계 특허출원이 많았다. 오프라인상에서 전자상거래를 뒷받침 하는 택배 등의 물류 시스템에 관한 출원도 다수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금융관계, 특히 경매, 역경매, 공동구매 등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출원이

많았으며, 사이버 커뮤니티 운영방식에 관한 출원도 여러 건 출원되었다. 아이러브스쿨 선풍이 일어난 이후에는 이의 아류라 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람찾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다수 출원된 바 있다. 이에 비하여 최근에는, 이렇다 할 특징을 보이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산만하게 출원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전자복권, 원격 교육, 영상 교육, 도메인 연동, 아이디 공유 방법 등과 관련한 아이템들은 아직도 꾸준히 출원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다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은, 비즈니스 모델 특허 출원의 대부분이 무선 통신 기술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다. 즉,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결제 방식,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거래 방법, 무선 단말기를 이용한 인증 방법, 무선 통신 시스템을 이용한 동영상 제공 방법 등이다.

2.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심사지침

비즈니스 모델 관련 발명이 이렇듯 굴곡을 겪으면서 출원되고 있는 한편으로, 특허청 등 일각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특허 허여 여부에 대한 법적, 제도적 검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급기야 특허청은 2000년 9월에,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이라는 기준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심사지침은 심사관이 심사를 할 때 참고하는 특허청의 내규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이는 특허청이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출원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것으로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특허성 논란에 대한 혼란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애초에는 이 심사지침을 비즈니스 모델 발명의 심사지침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비즈니스 모델의 범위의 한정에 어려움이 있고, 이 지침의 영향력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으로 한정했다는 후문이 있기도 하다. 특허청의 이러한 입장은 본 심사지침의 '일러두기'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에 관한 출원이란 영업을 행하는 방법과 관련되어 있고 그 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컴퓨터 기술에 의해 구현되며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금융, 경영관리, 교육, 오락 등의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발명에 관한 출원을 말한다.'라고 한 것에서 엿볼 수 있다. 그 내용을 극히 단순화하여 요약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전자상거래 심사지침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기준

영업방법	컴퓨터기술	신규성	진보성
신규함	신규함	있음	있음
신규하지 않음	신규함	있음	있음
신규하지 않음	신규하지 않음	없음	없음
신규함	신규하지 않음	없음	없음

위의 표 1은 미국 IBM사에서 특허를 담당하고 있는 Pete Tennent씨가 지난 11월 9일에 국내의 한 대학에서 Business Model Inventions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에 포함된 것이다. 전자상거래 혹은 비즈니스 모델 관련 발명의 특허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한국 특허청이 최초이기 때문에 다른 많은 나라가 한국의 이 심사지침을 참조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한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의 입장을 표 1과 같이 파악하고 있었다.

위 표 1에 나타난 기준을 보면, 영업방법이 종래의 그것에 비하여 새로운 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에 적용된 컴퓨터 기술이 종래기술에 비하여 신규성이 있다면 출원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표 1의 네번째 행의 기준에 대해서는 해석의 논란이 있다. 심사지침에서, 상세한 설명에 비추어 청구항을 해석한 결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던 영업방법과는 실질적으로 다른 영업방법을 컴퓨터 기술로 구현한 것으로서 종래와는 다른 구성요소를 구비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공지, 공용된 그 영업방법, 또는 출원일 전에 국내외에서 발행된 간행물에 기재된 그 영업방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진보성이 없다고 거절할 수 없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해석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다.

위의 논란 부분을 제외하고, 우선 이 심사지침으로부터 확실한 것은,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한정이 없는 유형으로서 순수한 영업방법, 예컨대, 피라미드 판매방법과 같은 순수한

영업방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업방법이 특허를 받을 수 있으려면 최소한 IT 기술과 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비즈니스 모델과 벤처기업의 특허 분쟁 원인

벤처 자금 시장이 움츠러들고 있는 가운데, 비즈니스 모델 특허출원 붐이 어느 정도는 식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도 다가온 듯하다. 그러나, 비즈니스 모델의 독창성과 사업성이 벤처기업의 성공 여부의 커다란 요인인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벤처기업이라는 현상이 사라지지 않는 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출원은 기복을 겪으면서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특허청의 위와 같은 진보적인 행보는 분명 벤처기업에 제공되는 다양한 인프라 중 하나를 발빠르게 해결해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 추진에 대한 안전판 확보 차원에서, 특허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이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출원해야 했던, 소위 '묻지마 출원'은 많이 사라지리라 기대된다.

특허청에서 발표한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100억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전체 비즈니스 모델 특허출원의 약 72%를 차지하는 반면, 매출액 1,000억 이상의 중견 혹은 대기업은 전체 비즈니스 모델 특허출원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맥락에서,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이 움츠러들고 있는 가운데, 비즈니스 모델 특허출원 건 수도 감소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비즈니스 모델의 독창성과 사업성이 벤처기업의 성공 여부의 커다란 요인이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발명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출원되리라 생각된다.

한편, 필자가 인터넷과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대해 강의할 때 빼놓지 않고 얘기한 것이 있었다. 앞으로 2~3년 뒤에는 인터넷, 벤처기업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특허 분야에서 특허 분쟁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이었다. 그리고 벤처기업들은 이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보다 앞서서 벤처기업 열풍과 비즈니스 모델 특허출원 붐을 겪었던 미국의 선례로 보아 어느 정도 예견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도 빨리 다가왔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무소에 경고장 발송을 의뢰하거나 경고장을 받아서 대책을 의뢰하는 건수가 부쩍 늘었다.

과거에 대기업 위주로 산업이 편성되고 알게 모르게 그들의 논리가 온 나라를 지배하던 시절에는 이러한 특허분쟁이 그리 많지 않았다. 어차피 전체 산업을 몇몇 알 만한 기업들이 과점하고 있는 터에 자신들끼리 싸워 봐야 서로 득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다르다. 벤처기업 간에 특허분쟁이 이처럼 격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로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벤처기업의 사업 특성 때문이다. 벤처기업의 주된 사업분야는 대규모 설비나 자본이 필요 없는 인터넷이나 특화된 부품산업이다. 벤처기업은 인터넷 사업이나 부품에 대해서 그리 많지 않은 특허를 가지고 있다. 적게는 한두 개에서 많게는 십여 개 정도면 자신의 사업영역에 필요한 특허는 갖춘 셈이 된다.

만일 자신이 하는 사업에 대해 타인이 특허침해 경고장을 보내 왔다고 생각해 보자. 분쟁에서 지면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당하거나 부품에 대해서 엄청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면 사업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경쟁이 과포화 상태이고 서비스의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은 인터넷 분야에서, 잘 나가던 사이트가 일주일만 폐쇄된다면 고객은 다른 사이트의 고객이 될 것이 뻔하다.

전통적인 산업 중에 이와 비슷한 예로는 화학이나 제약 분야가 있다. 아스피린에 몇 개의 특허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비아그라는 어떨까. 아마도 특허가 두세 개 이상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약이 거둬들이는 수익은 엄청나다. 그래서 제약업계의 신약 특허나 화학업계의 물질 특허는 개별 특허 하나의 비중이 전자나 기계의 그것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제약업계나 화학업계는 특허분쟁이 잦고 손해배상 액수도 엄청나다. 일단 소송이 붙으면 소송비용만도 수백만에서 수천만 달러가 나간다.

한편, 전자나 기계 분야를 살펴보자. 자동차 하나에 걸린 특허는 도대체 몇 개나 될까. 아마도 전세계에 등록된 자동차 관련 특허는 수백만 건이 될 것이다. VCR에 걸린 특허가 전 세계에 100만 건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부품 수가 만 개도 안 될 텐데 정말 엄청난 숫자이다. 그러나 이런 분야에서 특허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받더라도 자동차나 VCR을 만들지 못할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경고장을 받은 쪽도 특허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른바 크로스 라이센싱으로 해결하기도 한다. 특허 분쟁이 회사의 사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치명적이지는 못하므로 특허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반면에 벤처기업이 주로 하는 인터넷이나 부품사업은 전자나 통신 분야에서 갈라져 나온 분야이다. 하지만 특허분쟁에서는 화학이나 제약산업 분야의 특성을 더 많이 닮아 있다.

두 번째, 벤처기업의 진입장벽이 낮다는 점 때문이다. 진입장벽이라는 것은 잠재적인 경쟁자가 나서는 것을 배제하는 울타리라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자본, 기술 그리고 고급 인력 등이 있다. 전통적인 굴뚝산업이나 장치산업은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즉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진입장벽이 매우 낮다.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며 기술도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벤처기업은 무엇으로 진입장벽을 쳐서 경쟁자를 물리치고 우뚝 설 것인가. 바로 특허이다. 특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합법적인 독점 수단이다. 바로 이것이 벤처기업이 세울 수 있는 진입장벽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벤처기업은 특허를 확보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다. 이를 이용해 자신의 사업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다.

4. 국외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 분쟁 사례

이런 연유로 인터넷 또는 이를 기반으로 한 BM을 주 사업 테마로 하는 기업들 간에는 특허와 관련된 분쟁이 전례 없이 많다.

1999년 4월 현재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모두 4,03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까지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실제로 특허권을 행사하는 기업은 나타나지 않았다. 웬지 불안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유효성에 관한 기본적인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1998년 7월에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 판례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도 산업발전에 공헌하고 그 밖에 다른 특허 요건을 만족시킨다면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어서 1999년 12월 워싱턴주 연방 지방법원이 아마존닷컴사의 특허침해 가처분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계기로 비즈니스 모델 특허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움직임이 봇물 터지듯이 나타났다. 다음은 그 일부를 예로 든 것이다.

1999년 10월 21일 아마존닷컴사는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인 소위 원클릭 온라인 쇼핑기술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쟁업체인 반즈앤노블사(Barnes&Noble)를 특허침해로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에 제소하였다. 이 특허의 등록일이 1999년 9월 28일이므로, 특허를 받은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때의 일이었다. 이에 시애틀 지방법원은 1999년 12월 1일 침해중지를 명령하는 가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한 본안 소송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한편 1999년 10월 13일 프라이스라인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익스피디어(Expedia)란 웹사이트의 호텔 예약 서비스가 자사의 역경매방식 서비스를 복제한 것이라는 이유로 코네티컷주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역시 특허등록일이 1999년 9월 4일이므로 특허를 받자마자 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00년 2월 8일 개인발명가 앤런 콘래드(Allan Konrad)는 원격 서비스 액세스 시스템에 관한 특허권 침해에 기초해서 미국과 일본의 주요 사업자 39개사를 피고로 하여 텍사스 주연방 지방법원에 제소하였다. 피고에는 GM, 토요다, 혼다, 닛산 등의 자동차회사뿐만 아니라 NEC, 도시바 등의 전자회사, 항공회사, 렌트카회사, 힐튼, 매리엇 등의 호텔까지 포함된 대형 특허 소송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되어 콘래드는

미국에 제5,544,320호, 제5,696,901호 및 제5,974,444호 등 3건의 특허를 갖고 있다. 이 중 제5,544,320호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이미 라이센스를 허락했다. 계약 문구 중에는 제3자와 원하는 경우 적절한 비율로 재차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개인 발명가가 업종이 다양한 39개의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런 종류의 소송은 실질 심리가 시작되기 전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콘래드는 일부 피고에 대해 협상을 시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화해를 유도하여 로열티를 받아냈다. 그리고 이 로열티 수입으로 이어지는 나머지 소송비용을 내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광고의 강자인 더블클릭사(Double Click)는 마켓리서치사의 전문기업 L90사를 광고서비스 방법에 관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권 침해로 제소하였다. 이 사건에서 승소하면 다른 경쟁 기업에도 공격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처리기기의 강자인 피트니 보즈사는 우표자동처리방법에 관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권 침해로 이스탬프사(e-Stamp)를 제소하였다.

NES사는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관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대한 침해로서 옵션 분야의 최강자인 이베이사를 제소하였다.

주문생산방식에 관해 42건의 특허와 특허출원을 갖고 있는 델 컴퓨터사는 경쟁사인 컴팩사(Compaq)의 업무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권리침해가 확인되지만 하면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말많던 특허 소송으로 업계의 비난을 받아왔던 아마존닷컴이 이번에는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 처하기도 했다. 아마존을 고소한 기업은 인터치 그룹(Intouch Group Inc.). 이 기업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음악 회사로, 아마존을 비롯한 4개사에서 소비자들이 온라인 음악을 샘플링 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특허를 위반했다며, 샌프란시스코 지방 법원에 소송을 냈다. 문제가 된 특허는 음악상품 프리뷰와 시장 자료 편찬을 위한 네트워크 설비와 방법론이라는 이름으로 1999년 인터치(Intouch)에서 획득한 것이다. 이는 음악 상점에 있는 키오스크를 상대로 하는 예전의 특허를 연장한 것이다. 인터치의 키오스크 시스템인 아이스테이션(iStation)을 통해 사용자들은 CD를 구입하기 전에 샘플곡을 들어볼 수 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등록 과정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한편, 2000년에 BM 특허와 관련하여 전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으로, 브리티시 텔레콤(BT)의 하이퍼링크 관련 특허 사건이 있다. BT는 자사가 특허를 소유한 하이퍼링크 기술 사용료 지불을 요구하며 미국 ISP들을 압박하고 있다. 특허 제4,873,662호인 하이퍼링크 기술은 미국에서 1989년 BT측에 발급된 것이며 만기는 2006년이다. BT는

하이퍼링크 사용료 지불 문제와 이해 관계가 있는 미국 ISP들과 협상 중으로 알려져 있다.

5. 국내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 분쟁 사례

한편, 한국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출원되던 비즈니스 모델 관련 특허출원이 본물 터지듯이 출원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이다. 이와 거의 동시에 특허분쟁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디지털 영상 저장 시스템 업체인 성진씨앤씨는 휘스트정보통신이 동영상 압축설계 소프트웨어를 도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99년 12월, 홈페이지의 컨텐츠(contents) 도용 문제를 둘러싸고 (주)후이즈는 인터넷프라자시티, 싸다콤, 디플러스아이, 헬스인포 등에게 40여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머지 세 업체와는 합의에 도달하였으나, 결국 인터넷프라자시티와는 법적 분쟁을 계속하였다. 결국, 서울지법은 2000년 12월 후이즈에 대해 저작권 위반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 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글도 영리 목적이 아니고 출처가 분명하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2000년 3월에는 진보네트워크가 삼성전자의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 방법과 장치’에 대한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특허 논쟁이 또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삼성전자에 의하여 1999년 등록된 이 발명은 사람들 사이의 인위적인 약속과 정신적 활동을 이용한 것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요소가 없다.라는 주장으로 무효심판을 제기하였다. 들려지는 얘기로는 이 무효심판은 비즈니스모델 특허에 대한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 등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기 위하여 청구한 것이라 한다. 즉, 미국의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크 사건과 유사한 입장을 들으려고 한 것 같다. 2000년 12월 29일 이 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 심판부는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자의 학습을 평가 관리하는 원격교육장치를 실행하는데 따른 구체적인 수단을 한정하고 있고, 또 이러한 수단에 의한 물리적인 변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것임과 동시에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라고 인정된다.라고 하여 본 발명의 특허성을 인정하였다

한글.com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BM) 특허를 출원한 한글로닷컴은 SI리스트리의 한글.com 서비스가 비록 한글로닷컴 방식과 기술적으로는 다르다고 해도 겉으로 드러나는 서비스가 같기 때문에 한글로닷컴이 특허를 획득할 경우 NSI리스트리가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편,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분쟁을 제기한 경우도

있는데, 한국항공대 이궁해 교수는 2000년 9월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며 특허권 침해금지 및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낸 바 있다. 이 교수는 소장에서 MS사의 워드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오피스에 포함된 자동고침 기능은 본인이 개발, 1998년 특허권을 취득한 한·영 자동전환 기술을 무단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넷츠데이(주)는 네티즌들이 방문 사이트의 배너광고를 지우거나 원하는 다른 광고로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급, 포털업체들과 갈등을 빚고있다. 이성웅 사장은 『자신의 PC에서 광고를 지우거나 바꾸는 것은 전적으로 네티즌의 권리』라면서도 『분쟁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네오위즈는 최근 원클릭 인터넷 접속서비스에서 비즈니스 모델(BM) 특허를 따냈다. 이를 계기로 같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한국통신에 대한 법적대응 의사를 밝히고 나서면서 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00년 7월 네오위즈는 특허권 행사와 관련, MS와 한국통신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도 있다.

(주)인터파크의 「구스타(www.goodsdaq.co.kr)」이 (주)디지탈밸리의 「세일즈닥」BM 특허를 침해했다는 분쟁이 인터넷업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00년 4월 국내 대표적 인터넷업체인 인터파크는 주식을 사고파는 증권거래소와 유사하게 상품들을 인터넷상에 등록해놓고 경쟁 매매하는 인터넷 상품거래소 시스템 「구스타」을 발표했다. 이는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가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가격과 수량을 제시하고 조건이 일치된 시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또 2001년 1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 새롬기술, 오토데스크, 나모 등 정보통신 관련 국내외 15개사는 국내 최대의 인터넷 경매사이트 운영 업체인 옥션사가 자신들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했다며 2억 9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MS 등이 개발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컴퓨터 서버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옥션에 아무런 권한도 없이 불법 복제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6. 비즈니스 특허 분쟁을 통해서 본 고찰

이상에서 언급한 국내의 BM 관련 분쟁 사례들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상의 사례는 모두 언론상에 공개된 것만을 예로 든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실제로 BM 또는 벤처기업의 분쟁 사건에 관여한 것만 해도 10여건을 훌쩍 넘으므로, 짐작컨대, 부상하고 있는 벤처기업 치고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은 회사가 없을 것 같다.

많은 벤처기업들은 특허등록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원된 발명이 공개되자마자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 심지

어는, 공개도 되기 전에 경고장을 발송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공개전의 경고장은 법적인 구속력이 거의 없다. 그러나, 그만큼 BM 관련 벤처기업에 있어서 특허 문제는 중요함을 잘 대변해 주는 상황이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와 관련하여 특허분쟁이 많을 것을 예상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벤처기업은 고작 한두 개의 특허에 기초하여 사업을 하고 있어서 특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에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벤처기업이 경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이들 간의 특허분쟁도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막 짜을 티운 벤처기업의 사활은 결국 사업 아이템, 즉 비즈니스 모델의 우수성과 특허권 확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업 초기에 경고장을 받아 뿌리째 흔들린다면, 사업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도 전에 도태되기 십상이다. 아무리 우수한 기술과 마케팅력 그리고 인력을 갖고 있더라도 말이다. 이러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벤처기업은 특허권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데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인터넷 또는 벤처기업 열풍은 거품론에 부딪쳐 극도로 위축되기에 이르렀고, 한 때 너도나도 도입하던 닷컴이라는 회사명도 이제는 천덕꾸러기가 될 지경에 이르렀다. 닷컴 기업이 득세했던 미국의 나스닥 시장의 주가지수는 한창 때는 삼분의 일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미국 역사에서 이렇게 짧은 시기에 급격한 주가 변동을 보인 적이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변동성이 시사하는 바는, 그만큼 인터넷과 벤처기업 그리고 이들과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은 종래의 산업구조를 통째로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반영하는 것이라 본다. 지금은 다소 비관적인 시기의 중심에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많은 시스템은 정상상태로 가는 과정에 언더 뎅핑을 하는 것을 공학자라면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이 이 언더 뎅핑 과정중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는 조금 더 세월이 흘리야 확인해 드러나지 않을까. 많은 닷컴 기업이 도산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몰락의 시작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진통의 와중인지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도 인터넷 그리고 벤처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와 비슷한 굴곡을 겪고는 있지만 약간 다른 점은 있다. 벤처기업의 몰락과는 다소 대조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특허출원량은 전성기, 즉 1999년 및 2000년 초반에 비해서 별로 줄어들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이를 비즈니스 모델의 끊임없는 창출로 보기보다는 비즈니스 모델 관련 발명의 발명자의 저변의 확대에서 찾고 싶다. 발명에 대해서, 특허출원에 대해서 전혀 무관했던 사람들이 사업

아이디어도 특허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로 확산되고 있는 현상에 기인한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1998년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 사건에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공식 인정한 것이나, 닷컴열기의 한창이던 1999년 후반부에 아마존닷컴에 의해 반즈앤노블사를 상대로 제기되었던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던 것은 무엇을 시사할까?

일본의 제조업에 밀려 1980년대에 극도로 불황을 겪고 혹독한 구조조정을 견뎌내어야만 했던 미국 경제가 선택한 것은 바로 IT산업이다. 광대한 기초기술을 기반으로 IT 산업의 기반이 되는 통신, 소프트웨어 기술을 축적하면서 미국은 미래의 산업에 대비하였고, 이것이 인터넷이라는 신대륙을 만나 꽂피우게 된 것은 아닐까. 여기에 미국 특유의 파이어너리 정신, 즉 벤처기업의 활성화가 한몫 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신경제를 객관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틀로서 특허정책이 활용된 것이다. 1980년대부터 미국의 특허 정책이 소위 프로패턴트로 선회한 것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한 일련의 프로패턴트(Pro-Patent)적 사건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추세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두가지로 나타난 것 같다. 하나는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부당성에 기초하여 이를 무시하는 유형, 다른 하나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그것이다. 삼성전자와 같은 일부 발빠른 대기업은 적어도 국내에서는 상당량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위 굴뚝 산업을 하는 기업들에겐 아직도 비즈니스 모델은 먼 나라 이야기로만 느껴진다.

7.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예측 및 대응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단기간의 거품으로 끝날지 이것이 산업을 변화시킬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특허에 있어서 두가지의 경향은 뚜렷하다. 그 하나는, 특허 대상 범위의 확대이고, 다른 하나는 특허 허용 기준의 완화이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사건에서 확증한 바 있듯이 미국 특허제도는 특허의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비즈니스 모델 발명에 대한 진보성(Unobviousness)의 기준도 고도성보다는 실용성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1998년에 저작권 관련 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정된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에서 소프트웨어도 일련의 수준(플로우 차트)으로 표현되는 경우 특허로 인정하기에 이르렀으며, 최근의 비즈니스 모델 발명의 심사 사례를 보아도, 종래의 진보성 기준이 실무적으로 다소 완화되고 있는 느낌이 있다.

이러한 프로패턴스적 성향은 IT분야에서 다소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거나 혹은 일부 분야는 앞서있기도 한 한국 산업경제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직시하고 이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하여 개척발명을 미국에 선점 당했다면 우리는 Patent Flooding 방식(개척특허를 남에게 선점 당한 경우 이 개척 특허를 포위하는 다수의 개량 특허를 확보하여 대응하는 전략, 기초기술이 취약했던 일본이 개량특허를 다량 확보했던 사례를 일컫는 말)을 이용해서라도 국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보호를 서둘러야 할 것이며, 이는 곧 국내 신경제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다. ■

〈 저 자 | 소 개 〉



이철희(李哲熙)

1964년 9월 2일생. 1988년 서울대학교 제어계 측공학과 졸업. 1990년 한국과학기술원 전기및 전자공학과(전력전자 전공) 졸업(석사). 1996년 33회 변리사 시험 통과. 1996년-2001년 제일 국제특허법률사무소(해외출원 전문, 국내부총괄). 현재 I&S 국제특허법률 사무소 대표 변리사. 특허관리사 자격 시험 출제위원. 국제특허연수원 강사. 저서로는 “e-변리사의 돈되는 특허이야기”가 있음.